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4.

발 의 자 : 이재관 · 장종태 · 정진욱
박지원 · 문진석 · 김문수
박용갑 · 박희승 · 정일영
박해철 · 위성곤 · 박선원
이병진 · 김윤덕 · 황명선
황정아 · 강준현 · 양부남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(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)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,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.

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, 예술학원 등은 2024. 9.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, 입시학원 · 보습학원 등 일반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.

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

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4제3항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4제3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
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4(가맹점의 등록) ① . ② (생 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26조의4(가맹점의 등록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 ----- -----. 1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</u> 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